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1996. 12. 24] 규칙 제864호]

- 일부개정 1998. 9. 23 규칙 제 910호
(연천군 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1. 1. 2 규칙 제 975호
- 일부개정 2001. 7. 3 규칙 제 995호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1. 10. 24 규칙 제1006호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3. 3. 10 규칙 제1034호
- 일부개정 2005. 3. 16 규칙 제1071호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5. 10. 7 규칙 제1080호
- 일부개정 2011. 10. 14 규칙 제1217호
- 전부개정 2014. 2. 3 규칙 제1275호
-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327호
- 일부개정 2016. 5. 3 규칙 제1345호
- 일부개정 2017. 2. 21 규칙 제1370호
- 일부개정 2018. 4. 13 규칙 제1403호
- 일부개정 2018. 12. 18 규칙 제1433호
- 일부개정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전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 <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
5. 특기장학생: 예·체능, 과학·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
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

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
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우수장학생과 다자녀장학생은 별표 1, 별표 2의 점수에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고, 일반장학생은 별표 1, 별표 3의 점수에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며,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③ 장학생은 우수장학생 50퍼센트, 일반장학생 30퍼센트, 그 밖의 장학생 20퍼센트의

비율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④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외) 선발 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로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

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2. 18>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
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제8조(지침)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 1. 2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3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4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0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6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0. 7 규칙 제108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4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3 규칙 제1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 규칙 제1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21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3 규칙 제1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
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2. 21>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

우수·다자녀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제3조 관련)

- 직전 학년 평균성적(백분율 점수) × 0.7
-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성적(백분율 점수) × 0.7
(국어, 영어, 수학 + 선택 2과목)
- 검정고시 성적 백분율 점수 × 0.7 (국어, 영어, 수학 + 선택 2과목)

※ 동점자는 성적 중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우선 적용

일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제3조 관련)

- 직전 학년 평균성적(백분율 점수) × 0.2
-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성적(백분율 점수) × 0.2
(국어, 영어, 수학 + 선택 2과목)
- 검정고시 성적 백분율 점수 × 0.2 (국어, 영어, 수학 + 선택 2과목)

※ 동점자는 성적 중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우선 적용

[별표 2] <개정 2017. 2. 21>

우수·다자녀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 점
1	500,000원 미만	20
2	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9
3	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	18
4	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7
5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6
6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5
7	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14
8	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	13
9	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2
10	4,000,000원 이상	1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 <개정 2018. 4. 13>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200,000원 미만	70		
200,000원 이상~250,000원 미만	69	1,600,000원 이상~1,700,000원 미만	54
25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68	1,700,000원 이상~1,800,000원 미만	53
300,000원 이상~400,000원 미만	67	1,800,000원 이상~1,900,000원 미만	52
4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66	1,9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51
5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	65	2,000,000원 이상~2,100,000원 미만	50
600,000원 이상~700,000원 미만	64	2,100,000원 이상~2,200,000원 미만	49
7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63	2,200,000원 이상~2,300,000원 미만	48
800,000원 이상~900,000원 미만	62	2,300,000원 이상~2,400,000원 미만	47
9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61	2,4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46
1,000,000원 이상~1,100,000원 미만	60	2,500,000원 이상 2,600,000원 미만	45
1,1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59	2,600,000원 이상~2,700,000원 미만	44
1,200,000원 이상~1,300,000원 미만	58	2,700,000원 이상~2,800,000원 미만	43
1,300,000원 이상~1,400,000원 미만	57	2,800,000원 이상~2,900,000원 미만	42
1,4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56	2,9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41
1,5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55	3,000,000원 이상	40

[별표 4] 삭제 <2017. 2. 21>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제2조제1호 관련)

(기준)

예탁 현황						관리 현황		비고
예탁종류	계좌번호	원금	이자	예치기간	이율	해제일	해제사유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제2조제2호 관련)

연월일	장학금 종 류	장 학 생 인 적 사 항				지급액	비 고
		주 소	학교명	학년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제2조제3호 관련)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 12. 1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4. 13>

[별지 제9호서식]

장 학 증 서 (제6조제2항 관련)

학교 학년

○ ○ ○

위 학생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학년도 향토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연 천 군 수 ○ ○ ○

